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63
----------	------

발의연월일 : 2021. 3. 9.

발 의 자 : 강득구 · 강민정 · 김민기
김민석 · 김영호 · 김진애
민병덕 · 윤준병 · 이상현
이용빈 · 이원욱 · 최기상
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 · 보건 · 환경 ·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자료제출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활동에 있어서 감사담당자로 간주됨.

이러한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시민감사관제도”라고 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와 감사인력 부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보임.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회계 · 보건

· 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사기구”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외부전문가의 자격·임기, 직무범위, 운영방식 및 수당·여비, 그 밖에 외부전문가의 임용·위촉과 감사 참여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임용·위촉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u>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u> <u><신 설></u>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u>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u> <u>-----</u> <u>-----</u> <u>-----</u> . <u>②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④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외부전문가의 자격·임기, 직무범위, 운영방식 및 수당·여비, 그 밖에 외부전문가의 임용·위촉과 감사 참여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u>⑤ 제1항 및 제2항-----</u>
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	

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 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 -----.
--	-----------------------------------